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원자력안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(이하 “계속운전”)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심사계획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,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서류를 단일화하는 한편,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 평가 심사계획 통보 근거 조항 신설(안 제36조제7항)

-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받은 경우 제출자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는 근거 조항 신설

나.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출서류 단일화(안 제37조제2항, 제38조제2항)

-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‘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’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중복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단일화하며 필요한 관련 규정

정비

다.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에서 허가기관 제외(안 제143조제1항·제144조제1항)

- 사업자가 의견수렴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대상 행정기관에서 허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외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4항 및 제5항의 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8조 중 “제17조”는 “제36조”로, “건설 허가신청서”는 “평가보고서”로, “신청서류”는 “제출서류”로, “허가신청자”는 “제출자”로 본다.

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4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”를 “제143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6조·제37조·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부터 적용한

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6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6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제4항 및 제5항의 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8조 중 “제17조”는 “제36조”로, “건설허가신청서”는 “평가보고서”로, “신청서류”는 “제출서류”로, “허가신청자”는 “제출자”로 본다.
제37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) ① (생략)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.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. 1. (생략)	제37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(현행과 같음)

2.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
선환경영향평가

③ (생 략)

제38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
및 기준) ① (생 략)

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
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
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
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
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
을 적용한다.

1. (생 략)

2.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
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
할 것

제143조(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
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
및 공고·공람 등) ① 사업자는
법 제103조제1항, 제2항 및 제4
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
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
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
서 초안(이하 “평가서초안”이라
한다)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(이
하 “해체계획서초안”이라 한다)
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

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
및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43조(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
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
및 공고·공람 등) ① -----
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<u>위원회 위원장</u> 2. ~ 4. (생략) ② ~ ⑥ (생략) 제144조(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) ① <u>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</u>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,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. 1.·2. (생략) ② (생략)	-----. <삭 제>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44조(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) ① <u>제143조제1항제4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	
연 락 처	(02) 397 - 7260